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
조례안

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84
----------	-----

2025. 3. 21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박재주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3월 13일
 -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재주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본 조례안은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(안 제3조)
-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(안 제4조)

-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·수집·보존 사업 등 추진 사업 규정 (안 제5조)
-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 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【참고】

-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24.03.26.	21.07.14.	17.10.30.	21.12.30.	23.02.23.	-	19.11.17.	-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24.12.31.	-	21.09.30.	23.12.08.	19.07.09.	18.12.27.	19.11.07.	20.05.13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‘안 제2조’는 정의 규정으로,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를 준용함.
- ‘안 제3조’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으로,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규정함.
- ‘안 제4조’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함.

- ‘안 제5조’는 사업 규정으로,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▲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·수집·보존 사업, ▲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, ▲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함.
- ‘안 제8조’는 협력체계 구축 규정으로,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용상으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

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문”이란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인문을 말한다.
2. “인문학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인문학을 말한다.
3. “인문정신문화”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인문정신문화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
2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,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
3. 소요예산 및 자원 조달 계획
4.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사업)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·수집·보존 사업
2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
3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4.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인문교육의 실시)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, 시·군,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